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3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예지·김소희·백종헌

박덕흠 · 김도읍 · 최수진

엄태영 · 조정훈 · 서미화

김미애 · 김장겸 · 박정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 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 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 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	
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
	<u>포츠시청권 보장</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